

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 주의점

동물용마취제 졸레틸의 주성분인 틸레타민(Tiletamine)과 졸라제팜(Zolazepam)이 2015년 2월 2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다수 활용되던 마취제가 마약류로 지정되는 만큼 현행 법령에 따른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약품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2000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각각 별도로 관리하던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를 '마약류'로 통칭하게 됐다.

2015년 2월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된 마약류 제품은 펜타닐, 케타민, 디아제팜, 틸레타민, 졸라제팜, 치오펜탈, 페노바비탈 제제 등이다. 그 상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제품명	주성분	제조사	비고
펜타진-10	펜타닐	동방	마약(사슴용)
일리움이지널	펜타닐	보람농산	마약(사슴용)
보마살	치오펜탈	이글벳	향정
케타민	케타민	유한양행	향정
페노탈정	페노바비탈	대한뉴팜(주)	향정
디아진주	디아제팜	대한뉴팜(주)	향정
졸레틸	틸레타민, 졸라제팜	버박 코리아	향정

수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자목에 규정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된다.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합법적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된다. 다만 마약류는 취급자교육, 구입·저장·관리, 폐기 등에 있어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마약 혹은 향정 여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업무 주무기관

동물병원 인허가 업무는 각 지자체의 지역경제과 혹은 축산과 등이 담당하는데 반해 마약류 관리 업무는 보건소 등 의료담당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병원을 일선 병원이나 치과병원, 한의원과 다르지 않게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업무는 의료담당부서에서 관리하게 된다.

즉 동물병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신고, 서류제출이나 관련 문의를 각 지자체 보건소의 마약담당부서에 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 교육

동물진료에 종사하게 된 수의사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되지만, 동물진료에 종사하게 된 후(동물병원 개설 혹은 진료수의사 등록) 1년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시행규칙 제47조).

교육은 1회 2시간이며,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은 대한수의사회 각 시·도지부 2015년 연수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경고 내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 23호).

마약류 의약품 구입

마약은 동물병원이 소재한 시·도의 마약류도매업자에게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향정은 시·도 제한 없이 마약류도매업자 혹은 마약류제조업자에게서 구입이 가능하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이나 향정을 양수한 경우 법 제60조와 61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마약은 시·도 마약담당부서에 마약구입서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해 마약구입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교부 받은 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마약을 구매할 때 서명 혹은 날인해 교환해야 한다. 이 때 교환한 마약구입서는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구입과정에서 마약구입서를 누락하거나 2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63조)과 1개월 내지 3개월의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행정처분(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 7, 8호)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끼리의 양도·양수는 금지되어 있다(법 제9조). 동물병원도 폐원 시 남은 마약류를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평소의 양도·양수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약류 의약품의 보관, 사용, 기록

향정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마련된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마약의 경우 이중 잠금장치와 철제 금고가 필요하다. 향정은 동물병원의 업무시간 중에는 조제대 위에 비치할 수 있다(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6조). 마약류의 저장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제11호와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저장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시행규칙 별지 24호)에 기록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를 투약·교부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사용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마약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향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할 경우 이에 대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사용한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할 경우는 제외된다. 이 때 해당 진료기록부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약류 사용 관련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3조와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사고 마약류의 처리

마약류 의약품이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도난, 변질·부패, 파손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3조).

사고마약류 발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마약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8호, 향정의 경우 법 제64조 제3호).

보고된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혹은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사고마약류등의 폐기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병원의 경우 각 시·도의 마약담당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동물병원 폐업에 따른 마약류 의약품의 처리

동물병원을 폐업할 경우 해당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격이 없어진다. 따라서 남은 마약류 의약품은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사고마약류로 신고하여 폐기해야 한다(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3조).

폐업으로 인해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남은 마약을 신고없이 취급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마약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0호, 향정의 경우 법 제64조 제3호, 제8호).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허가관청(동물병원의 경우 각 시·도 마약담당부서)을 권장함)에 신고해야 한다.

졸레틸 향정 전환에 따른 주의점

동물병원의 경우 전환일인 2015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졸레틸의 재고량을 기준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마약류관리에 필요한 저장시설이 없다면 구비해야 하며 수입업소가 공급한 '향정신성'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동물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 요약

	향정신성의약품	마 약
1. 마약류 취급자 신고	•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함	
2. 마약류 취급자교육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된 후 1년 이내에 2시간의 1회 교육을 받아야함(필요시 추가교육 실시) ※ '현재 각 시·도지부의 수의사 연수교육시 병행하여 실시 중임	
3. 마약류 약품의 구입	• 정부가 발행한 봉함증지로 봉함된 상태에서 수수되어야 함 ※향정신성의약품제제(주사제)는 예외 •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구입가능	• 동물병원이 소재한 도내의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구입가능 • 구입 전 각 시·도의 마약담당부서(보건위생과 또는 보건소 등)에 "마약구입서 발급신청서"(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 "마약구입서"(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교부받은 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마약을 구매할 때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해야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함
4. 마약류 약품의 저장	•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함 • 잠금장치가 있어야 함 ※동물병원 업무시간중에는 조제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 비치가능	•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를 사용해야 함